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3.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개방 대상 학교시설이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등 체육시설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학교체육시설을 동호회·체육단체 등도 이용하는 현황을 반영하여 이용주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발생하는 사고 관련 민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관리주체 간 이용계약에 따라 책임을 이 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도 학교장 등의 민사상 책임을 면책하여 학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수정주요내용

- 가. 개방 대상 학교시설을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체육시설’로 구체화하고, 이용주체를 ‘주민 등’으로 확대함(안 제9조제1항 신설 등)
- 나. 학교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해 관리주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안 제9조제3항·제4항 신설)
- 다. 학교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계약 체결, 안전점검 등 필요

조치 이행 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
사상 책임이 면책됨(안 제9조제5항 신설)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의 제목 중 “생활체육시설로”를 “생활체육시설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각 제2조의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현저한”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에”로, “주민이”를 “주민 등이”로, “운동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생활체육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를 “운동장 등(이하 “학교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학교행사”를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행사”로, “학교시설”을 “학교체육시설”로, “있다”를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항의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를 “학교체육시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각급 학교의 장 등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는 제1항의 학교시설의 설치 및”
을 “제1항에 의하여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그 시설의”로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체육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의 개방과 그 이
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주민 등이 학교체육시설을 용이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의 원활한 개방과
이용을 위하여 관리주체와 학교체육시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의 자격, 보험의 가입, 안전점검 등 이용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로 이용) 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각 제2조의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 주민이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생활체육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에 -----주민 등이-----운동장 등(이하 “학교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 ---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행사----- ----- ----- -----

아니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
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이를 이용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
거나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고, 그 사
유가 소멸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학
교시설을 개방하여
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학
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1항의
학교시설의 이용을

--학교체육시설--

--있으며 이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의 생활체
육시설 등으로의
개방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
· 감독하며 주민
등이 학교체육시설
을 용이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각급 학교의 장
은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의 원
활한 개방과 이용
을 위하여 관리주
체와 학교체육시설
에 관한 이용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구두·서면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몰 후에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교육감은 학교 시설의 생활체육시설로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시설로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8조제3항을 적용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

④ 관리주체의 자격, 보험의 가입, 안전점검 등 이용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학교체육시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각급 학교의 장 등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서 삭제>

⑥ 제1항에 의하여

	<u>치단체는 생활체육</u> <u>시설로 이용되는</u> <u>제1항의 학교시설</u> <u>의 설치 및 유지·</u> <u>보수 등에 필요한</u> <u>인력 및 경비를 지</u> <u>원할 수 있다.</u>	<u>학교체육시설을 개</u> <u>방하는 경우에 국</u> <u>가 및 지방자치단</u> <u>체는 그 시설의---</u> <u>-----</u> <u>-----</u> <u>-----.</u>
--	--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52
----------	------

발의연월일 : 2024. 7. 17.

발 의 자 : 임오경 · 김남근 · 김재원
박수현 · 한민수 · 박 정
서영교 · 차지호 · 민병덕
조계원 의원(10인)

제안이유

현대인의 고질병인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관계망 강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여가시간의 증가,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주민들에게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교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개방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는 학교시설이 파손되는 경우 유지·보수 비용을 학교가 부담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법」 제758조의 시설물의 관리자의 책임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관리자인 학교의 장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협조하고, 이러한 생활체육 사용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는 학교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와 책임 규정을 신설하며, 생활체육을 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교의 장이 「민법」 제758조의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면책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각 제2조의 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주민이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생활체육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함(안 제9조제1항 신설).

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 이용 신청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구두·서면 등을 통해 통보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교육감은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시설로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라.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9조제5항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개방 대상 학교시설을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체육시설’로 구체화하고, 이용주체를 ‘주민 등’으로 확대함(안 제9조제1항 신설 등)

나. 학교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해 관리주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안 제9조제3항·제4항 신설)

다. 학교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계약 체결, 안전점검 등 필요조치 이행 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 면책됨(안 제9조제5항 신설)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주민 등이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이하 “학교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체육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의 개방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주민 등이 학교체육시설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의 원활한 개방과 이용을 위하여 관리주체와 학교체육시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의 자격, 보험의 가입, 안전점검 등 이용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학교체육시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의 장 등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의하여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주민 등이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이하 “학교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② 교육감은 학교체육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의 개방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주민 등이 학교체육시설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u>

있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의 원활한 개방과 이용을 위하여 관리주체와 학교체육시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의 자격, 보험의 가입, 안전점검 등 이용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학교체육시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의 장 등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의하여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